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장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51

발의연월일: 2025. 6. 2.

발 의 자:신장식·김선민·서왕진

박지원 · 김재원 · 김준형

차규근 • 황운하 • 정춘생

강경숙 · 이해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족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'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'을 실시하고 있음.

한편 지원기준은 시행령 및 「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하고 있는데, 그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 또한, 지원제도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안내 및 인식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.

이에 지원 대상자 및 규모를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, 피해지원

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2항 후단 신설 등)

법률 제 호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 중 "지원할"을 "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"로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"으로, "제4항에"를 "제5항에"로, "대상·기준·금액·방법 및 절차"를 "구체적인 대상·기준·금액·방법·절차 및 고지"로 한다.

-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한다.
- 1. 중증후유장애인: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재활시설의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
- 2. 유자녀: 생활자금의 대출, 양육비·자립지원금 및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
- 3. 피부양가족: 노부모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
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서적 · 경제적 지원
-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양육비·보조금의 수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9조제2항 중 "제30조제4항에"를 "제30조제5항에"로 한다. 제39조의12제2항제4호 중 "제30조제4항에"를 "제30조제5항에"로 한다. 제45조제4항 중 "제30조제4항에"를 "제30조제5항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적용례) 제30조제2항 후단 및
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
따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도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0조(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) 제30조(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) ① (생략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(重症 後遺障礙人)의 유자녀(幼子女)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 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 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 ------다음 각 호 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--------.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총 소득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 법」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 하로 한다. 1. 중증후유장애인: 「의료법」 <신 설> 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「장 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재활시 설의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 의 보조 및 학업의 유지를 위 한 장학금의 지급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 ③· ④ (생 략)
- ⑤ 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금액ㆍ방법 및 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⑥ (생략) 략)

- 2. 유자녀: 생활자금의 대출, 양 육비·자립지원금 및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
- 3. 피부양가족: 노부모 등에 대 한 보조금의 지급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서적 · 경제적 지원
-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 른 양육비・보조금의 수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, 「국민기 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급여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 다.
- ④· 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)
-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---------제5항에-----
- -----구체적인 대상· 기준 · 금액 · 방법 · 절차 및 고

- 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 제39조(청구권 등의 대위) ① (생 제39조(청구권 등의 대위) ① (현 행과 같음)
 - ② 정부는 <u>제30조제4항에</u> 따라 ② -----<u>제30조제5항에</u>-----

보험회사등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.

③ (생 략)

- 제39조의12(기금의 조성 및 용도)
 - ① (생 략)
 -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 - 1. ~ 3. (생략)
 - 4. <u>제30조제4항에</u> 따른 미반환 가불금의 보상
 - 5. ~ 14. (생략)
- 제45조(권한의 위탁 등) ① ~ ③ (생 략)
 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<u>제30조제</u> 4항에 따른 보상 업무와 제39 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 수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⑤ ~ ⑧ (생 략)

	③ (현행과 같음)
제	39조의12(기금의 조성 및 용도)
	① (현행과 같음)
	②
	· 1. ~ 3. (현행과 같음)
	4. 제30조제5항에
	4. <u>/110044/110-8-11</u>
	5. ~ 14. (현행과 같음)
세	45조(권한의 위탁 등) ① ~ ③
	(현행과 같음)
	④ <u>제30조제</u>
	<u> 5항에</u>
	⑤ ~ ⑧ (현행과 같음)